

# 보건의료복지시설 건립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The Political Proposals for Successful Promotion of The Healthcare, Welfare Facilities BTL projects

배좌섭(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박사과정) Bae, Joa-Sup\*

## 1. 서론\*

정부에서 2005년부터 정책적으로 도입한 민간투자사업 중 국민에 대한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 시급한 제공을 위한 시설건립 민간투자사업은 주로 BTL사업(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 추진 BTL사업은 초기에는 주로 공공의료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국한되었으나 2009년부터 청소년복지시설사업까지 그 범위에 포함되는 등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보건복지가족부 추진 BTL사업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실제로는 타 부처 BTL사업에 비해 수행실적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BTL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글에서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보건복지가족부 추진 BTL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추진실적이 미진한 이유를 분석하여봄으로써, 보건의료복지시설 BTL사업의 정착화를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 본 글은 필자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보건, 의료, 복지시설 건립 BTL사업에 대한 업무지원 및 자문을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바를 정리한 것으로, 개인이 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표 1] 현 보건복지 BTL사업 추진 현황

구분	총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국회 승인사업 (사업개수 / 총사업비:억 원)	30/4,928. 5	5/1,103.5	6/1,060	3/903	1/500	15/1,362
사업명 (총사업비: 억원)	-	영덕청소년수련 시설(372) 김제청소년수련 시설(220) 서귀포의료원 (400) 함평노인병원 (56.5) 광교신도시청소 년수련시설(55)	안성의료원(400) 국립암센터(405) 부산노인병원(9 1) 군산노인병원(8 2) 의령노인병원(4 1) 울진노인병원(4 1)	충주의료원 (571) 화순노인병원 (150) 순창노인복지 시설(182)	우수한약재유통 지원시설(500) -5개지자체 번들링사업	강진의료원(350) 안성의료원(334) 신안군종합복지 타운(152) 노인의료복지시 설10개소(494) 재가노인복지시 설3개소(32)
실제 수행사업 (사업개수 / 총사업비:억 원)	10/2,751. 5	4/1048.5	2/132	2/721	1/500	1/350
사업명	-	영덕,김제청소 년수련원, 서귀포의료원, 함평노인병원	부산노인병원 의령노인병원	충주의료원 화순노인병원	우수한약재유통 지원시설	강진의료원

주) 사업별 총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함

## 2. 본론

### 2.1 보건복지가족부 추진 BTL사업 현황

현재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된 BTL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수로는 총 30건이며, 사업비규모로는 총 4,928.5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실제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비율은 총 사업건수 대비 약 33% (10건/30건) 수준이며, 총사업비 대비로는 약 56% (2,751.5억원/4,928.5억원) 수준에 그치는 등 타 부처사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행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현재까지 시설이 준공되거나 준공된 후 운영 중인 사업이 없는 등 사업진행의 가시적인 실적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실제로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는 듯,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보건복지가족부 BTL사업은 2010년에는 오히려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 1개로 축소되는 등 BTL사업의 안정적인 정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2 복지부 추진 BTL사업의 문제점

필자가 BTL사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끼게 된 현 복지부 BTL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크게 제도 및 절차상의 측면과 사업지원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제도 및 절차상 측면

제도 및 절차상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보건, 의료, 복지 BTL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 내에 BTL사업에 대한 기획조정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진 중인 전체 BTL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BTL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규모가 현실적으로 책정되지 못하여 민간사업자의 유인 및 참여가 저조한 점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업부지나 시설의 콘텐츠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 가. 기획조정부서의 부재

복지부 BTL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복지부 내에 BTL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부서 또는 총괄업무담당자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BTL사업이 상대적으로 원활히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교육부, 국방부, 환경부 등 타 부처 BTL사업 전담부서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것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사업희망부서\* 및 각 지자체들이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업무상의 중복 및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며, 또한 사업추진현황의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추진의 관성력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 나. 사업비 및 규모책정의 비현실성

BTL사업의 경우 시설건설사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주무관청 업무담당자의 건설사업 이해도가 향후 업무추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재정사업과 BTL사업은 사업의 성격, 추진방식, 소요사업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업무담당자의 BTL사업에 대한 사전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향후 업무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조직의 특수성(잡은 보직변경 및 기존 보건복지업무 수행자를 중심으로 한 업무배치)으로 인해 복지부 내 부서 및 지자체 사업추진 부서 담당자의 BTL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이해도가 심화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해당 업무담당자는 물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까지 사업추진에 있어 많은 혼선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사업추진과정 중 건축비산정을 통한 적정사업비의 책정, 사업부지와 관련된 문제들의 사전검토과정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BTL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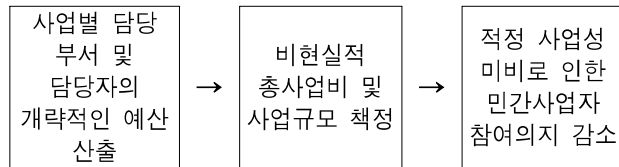
또한, 올해부터 민간투자기본계획의 변경(기획재정부 공고 제2009-14호, 2009.2.26)을 통해 사전 민자적격성조사\*\*\*가 의무화됨으로 인해 제도상의 미비점이 개선된 바 있으나, 그 이전까지는 사업 추진 전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전 민자적격성조사의 수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 공공의료원건립 BTL사업의 경우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과에서, 노인전문병원건립 BTL사업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에서, 청소년수련시설건립 BTL사업은 아동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공공의료원의 경우 해당 도청 보건위생과,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시단위는 해당 시청 보건위생과, 군단위는 해당 군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민간투자적격성 조사는 해당사업을 정부가 실행하는 대안(재정사업)과 민간이 실행하는 대안(민간투자사업)으로 비교하여, 민간투자대안이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VFM(Value for Money)분석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책적,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게 됨

추진됨으로써 비현실적인 사업비와 사업규모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예비타당성 및 사전 민자적격성조사와 같은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적정사업비의 정밀한 산출과 그에 따른 현실적인 사업규모 설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1] 2008년까지의 복지부 BTL사업의 일반적인 사업추진 흐름

실제로 이러한 비현실적인 사업비와 사업규모의 설정으로 인해 2008년의 경우 총 4개의 노인 전문병원건립 BTL사업 중 2개의 지자체사업이 무산되고 나머지 2개의 사업만이 추진되었으며, 그나마 진행되는 두 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경쟁이 아닌 단수의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활발한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BTL사업의 경우 재무적투자자(FI)들의 사업참여기준이 총사업비의 Funding이 가능한 최소 100억원인데 반해 노인전문병원건립 사업의 경우 대다수가 40~60억원 정도의 작은 규모로 사업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의 참여가 용이하지 않으며, 그나마 적정공사비가 책정되어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 BTL사업의 주관사인 건설사가 사업참여를 꺼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 기타 사유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

① 사업부지와 관련된 행정절차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지연

BTL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부지는 해당 주무관청이 제공하게 되어 있으나,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주무관청에서 사전에 부지를 완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다수이다. 이럴 경우 부지와 관련된 사전환경성검토, 부지매입 지연 등 각종 행정절차와 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가능성이 이미 잠재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안군종합복지타운 BTL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이후에 주무관청이 사업부지를 변경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대표적 사례이며, 순창노인복지시설 BTL사업의 경우 2007년 내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주무관청에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을 취소한 예이다. 기타 다른 BTL사업의 경우에도 주무관청에서 사업추진 중 부지를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다수 발생하여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참여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② 시설의 콘텐츠 운영에 관한 BTL 민간사업자와의 명확한 역할설정 필요

보건의료복지시설 BTL사업의 경우 시설유지관리 및 보수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시설의 운영은 BTL사업 민간사업참여자인 특수목적회사(SPC)의 시설유지관리 전문운영사에서 수행하지만, 실제 건립된 시설의 소프트웨어적인 콘텐츠 운영(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주체는 BTL사업과 별도의 과정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이다.

시설사용 및 설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제 사용자(user)에게 필요한 시설건립을 위해서는 시설이용주체(콘텐츠 운영주체)가 사전에 존재하고 있어야 설계 및 시공 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추후 설계변경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 추진 BTL사업 중 공공의료원건립 BTL사업의 경우에는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조직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수립 시에 사전의견반영이 가능하며, 또한 추후 선정되는 BTL사업 SPC(우선협상대상자 내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하에 운영상의 역할 분담 조정 및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반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노인전문병원건립 BTL사업의 경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법인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TL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향후 시설 사용자(의료법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설계가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주무관청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건립을 위한 BTL사업자가 선정된 후 사업추진이 보다 가시화되어야 의료법인선정이 용이한 면이 있고, 의료법인의 입장에서도 시설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사업참여여부 판단이 가능한 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제약에 의해 현재까지 수행된 노인전문병원 BTL사업의 경우 SPC의 운영법인은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측면의 하드웨어적인 운영만을 담당하고, 시설의 콘텐츠 운영(의료서비스의 제공)은 BTL사업과는 별도로 선정되는 의료법인이 담당하도록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의 의견반영의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BTL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사업자(SPC)에 시설콘텐츠운영업체(의료법인)를 포함시키는 방안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시설콘텐츠운영계획(의료서비스 제공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고시하는 방안의 가능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박물관 또는 과학관 건립 BTL사업의 경우 전시 및 기획을 수행하는 전문 기획사가 전시법인으로 SPC에 함께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여 진행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BTL사업 중 국립해양박물관, 울산광역시립박물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BTL사업사례 등)

## 2) 사업지원적인 측면

### 가. 복지부 및 지자체 사업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 및 지자체에 BTL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의 배치 및 조직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

### 나. 전문 지원기관 부재

타 부처의 경우 BTL사업을 위한 전문지원조직이 구성되어 주무관청 및 해당부처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다수 보건, 의료, 복지 BTL사업의 경우 타 부처와는 달리 BTL사업에 대한 전담지원조직이 부재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2.3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 검토

상기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역시 제도 및 절차상의 측면과 사업지원적인 측면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부산노인전문병원의 경우 BTL사업 고시 전 운영의료법인이 선정되었으나, 그 외 화순노인전문병원, 의령노인전문병원, 함평노인전문병원의 경우 BTL사업 고시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별도의 과정을 통해 선정되거나 선정될 예정에 있음

\*\* 교육부의 경우 교육개발연구원 산하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EDUMAC),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산하 민간투자관리센터, 환경부의 경우 BTL사업팀, 국방부의 경우 특수사업2팀 등이 해당 부처 BTL업무의 전담지원을 맡고 있음

## 1) 제도 및 절차상의 측면

### 가. 복지부 내 BTL사업 기획조정부서 설치

복지부 내에 BTL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구비한 인력을 배치하여, 합리적인 BTL사업의 추진방향 및 계획을 설정하고 사업수행 결과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신청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경제적으로 타당성을 가진 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전체 BTL사업에 대한 기획 및 조정 역할의 수행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행 중인 BTL사업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성과 평가 및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추진부서 및 지자체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고, BTL사업의 목적과 취지, 성격에 맞는(시급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사업에 한한 선별적이고도 우선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사업의 타당성을 기초로 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의 사전수행 의무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의 제도개선을 통해 BTL사업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수행하여야 함이 의무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보다 확대하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 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동시에 사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그 수행결과를 현실적이고 적절한 사업규모 설정기준 및 사업시행여부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민자사업으로 적격성이 없거나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기존의 재정사업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다. 부지 확보 및 부지 관련 행정절차 완료 의무화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 및 지자체는 사전에 부지확보 및 부지관련 행정절차 완료를 의무화하도록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전에 발생가능한 위험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여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사업지연가능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사업추진부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과 및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와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여 실제 확보 및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BTL사업추진 절차상 일정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환경성검토 및 재해영향성검토 수행 여부 등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와 검토들을 미리 면밀히 거친 다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라.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BTL사업의 체계수립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모든 공공민자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지침 및 관리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PIMAC에서 제시하는 BTL사업관련 지침은 BTL사업의 큰 틀에 맞는 일반적인 내용이 주이며, 이를 지침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방부 등은 해당 부처의 특성에 맞는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시설유지관리지침, 협상매뉴얼 및 성과평가시스템 등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현재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노인전문병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 분야별 보건복지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BTL사업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복지부 추진 BTL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향후 시행전략을 수립하는 등 보다 세부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사전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시설별 특성에 맞는 시설콘텐츠운영계획수립과 BTL 민간사업

자(SPC 운영분야)와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관계설정의 기본 토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는 향후 시설별 적정 규모, 설계 및 시설운영 기준, 시설의 복합화, 부대 및 부속사업개발 등 BTL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각종 세부적인 전략 및 기준설정의 가이드라인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BTL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의료원 및 노인전문병원시설건립, 노인복지시설건립을 위한 지역별 의료, 복지서비스 수요현황 및 지역별 서비스제공의 우선순위 등 관련된 근거자료의 시급한 확보 및 확충도 중요하다. 복지부는 이러한 자료의 구축을 통해서 BTL사업 추진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을 확고히 정립하고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설득해 나가는 등 보다 사업추진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 2) 사업지원적인 측면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사업담당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는 해당 부서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PIMAC이나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BTL전문 교육과정을 필히 이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매년 변경되는 BTL사업의 제도와 법규, 업무기술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여 BTL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에서는 가급적 건설사업의 과정을 이해하거나 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적인 업무지원의 측면에서 타 부처 BTL사업의 지원조직을 참고하여 BTL사업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함도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예비타당성 및 민자사업적격성조사, RFP수립,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를 중심으로 지원 역할을 맡기도록 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추진을 위한 실제적인 사업의 기획, 조정 역할 및 행정적인 측면의 해결에 노력을 집중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들을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하며, 홈페이지 개설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진행 시 어려운 점이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및 가이드라인의 제시도 필요한 부분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업단계별 평가 및 미비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시스템의 지속적 보완과 사후관리의 수행도 복지부 및 지원조직, 해당 주무관청과의 밀접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3. 결론

이상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통해서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이 타부처 BTL사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원활한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가시적인 측면에서도 그 성과가 부족한 이유를 크게 제도 및 절차상의 측면과 사업지원적인 측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제도 및 절차상의 측면에서는 복지부 내 BTL사업 기획조정부서의 부재, BTL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규모책정의 비현실성, 기타 부지 및 시설 콘텐츠운영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 등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사업지원적인 측면에서는 복지부 및 지자체 사업추진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전문 지원기관의 부재 등의 문제점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역시 크게 제도 및 절차상의 측면과 사업지원적인 측면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 볼 수 있었는데, 제도 및 절차상의 측면에서는 첫째, 복지부 내 BTL사업 기획조정부서를 설치하여 타당성을 기초로 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의 발굴과 선정 과정 및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성과 평가와 모니터링의 수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로는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의 사전수행을 의무화하여 현실적이고 적절한 사업규모와 사업비를 책정하고,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오히려 기존의 재정사업방식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셋째로는 부지확보 및 부지관련 행정절차의 사전완료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사업지연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함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BTL사업의 기준을 재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한편, 사업지원 측면에서는 타 부처의 BTL사업지원조직을 참고하여 전담 지원조직을 구성함으로써 해당 주무부처 및 주무관청 사업추진부서 담당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지원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본 논고의 내용은 BTL사업의 민간사업자측면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 및 주무관청, 그리고 현 BTL사업추진의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물론 민간사업자들의 사업참여적인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BTL사업은 정부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시행하여야 성공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정부정책과 제도상의 개선 및 정비는 BTL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덧 복지부 BTL사업은 2010년을 맞아 시행 6년째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동안 복지부 BTL사업의 업무지원 및 자문을 수행해 온 필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기존의 정책적 관성에 의한 사업의 무비판적 추진보다는 지난 5년간의 사업수행결과를 중간점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건, 의료, 복지의 특성에 맞는 BTL사업의 체계를 새로이 보완하고 재설정할 시점이라 여겨진다.

주지하다시피, BTL사업은 관련예산확보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자본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의 효율을 이용하여 필요한 시설을 조기에 건립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향후 국가의 재정부담을 점점 가중시킨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면도 함께 지닐 수 밖에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또한, BTL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BTL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서비스의 적기제공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기존의 재정사업과 비교하여 볼 때 생소하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여러 절차상의 곤란함 속에서 굳이 BTL사업을 통한 시설건립을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공공과 민간 안팎의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TL제도는 국민복지에 대한 정부-울라만 가는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수준을 맞추기 위해 세계적인 불경기 속에서 대규모 재정을 확보하고 투입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매력적인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음도 사실이다. 또한, BTL은 국가에서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이미 수년 전 도입해서 운용되고 있는, 검토단계가 아닌 현실 속에 이미 활용되고 있는 제도라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BTL이 가진 운용상의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장점을 보다 극대화시킴으로써 이 제도가 국가정책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만, 그 원취지인 “대국민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이고도 시기적절한

제공"이라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주무관청, 민간사업자 등 BTL 사업과 관련한 이들 모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고민, 그리고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이 물론이다.

부디 본 제언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는 BTL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부족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

